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24년 7월 2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 
(영문명) Mastern Investment Management Co.,Ltd.  
(홈페이지) <https://www.mastern.co.kr/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20층,21층,22층(서초동,  
교보생명보험(주) 서초사옥)  
(전 화) 02-3452-2077

대 표 이 사 : 남궁훈, 이상도, 홍성혁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준법감시인/상무  
(성 명) 장성준 (전 화) 02-2176-3901

작 성 자 : (직 책) 본부장/상무  
(성 명) 석진철 (전 화) 02-3452-2078

제 출 이 유 :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제3항, 「동법 시행령」 제36조제2항 및 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 제2-59조에 따른 『법정공시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6-6-2호)

### 소송 등의 판결.결정

1. 사건의 명칭	2022가합500838 손해배상(기)
2. 원고·신청인	하나증권 주식회사
3. 판결·결정내용	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억6천만원 및 이에 대한 2022.1.21.부터 2024. 7. 18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 2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기각한다. 3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 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4. 판결·결정사유	원고의 사업기여도,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에 이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%로 제한하였음
5. 관할법원	서울중앙지방법원
6. 판결·결정일자	2024년 7월 18일
7. 확인일자	2024년 7월 26일
8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항소 기한 내 항소 여부 결정할 계획임

#### <기재상의 주의>

- 주1)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(가처분 포함) 등의 판결·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.
- 주2) “판결·결정사유”는 소송의 포기·취하·인낙·화해, 판결, 결정, 명령,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.
- 주3)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·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